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제1장 운영 매뉴얼

- (9페이지, 사전안내 및 급여계약) 타기관 급여이용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월정액이 산정되는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 이용 불가	월정액이 산정되는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고시 제 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 이용 불가

- (11페이지, 일반원칙) 타기관 급여이용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가서비스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월단위(매월 1일~말일까지)로 급여를 제공하며, 월중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해당 월에 통합재가서비스 개시 가능 - 월정액이 산정되는 통합재가 수급자는 월 한도액의 10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 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 이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가서비스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월단위(매월 1일~말일까지)로 급여를 제공하며, 월중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고시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해당 월에 통합재가서비스 개시 가능 ※ 통합재가서비스 계약기간 중에는 일반 재가급여 계약기간을 중복하여 등록 불가 - 월정액이 산정되는 통합재가 수급자는 월 한도액의 10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 급여(기타 재가급여, 고시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 이용 불가

- (13페이지, 제공기준) 급여관리 업무 명확화

- 사례관리자가 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

○ (16페이지, 서비스 가산 제공기준) 동행자·운전자 직종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운전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종류에 신고된 인력 중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직종의 종사자로 함.		구분	주·야간보호로 급여비용 청구	방문요양으로 급여비용 청구
		동행자	주·야간보호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에 소속되어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운전자	주·야간보호에 소속된 시설장, 사무원, 운전보조원 등	방문요양에 소속된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 (17페이지, 가산산정) 급여관리 업무 주·야간보호 월 10일 이상 이용 조건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4) 사례관리자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해당하는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4) 사례관리자가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해당하는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 다만, 주·야간보호형 제공기관에서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고시 제32조 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비용 포함)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야간보호 제공시간 중 주·야간보호의 사례관리자가 수행 가능 ※ 사례관리자가 소속된 급여종류의 급여 제공시간 중 실시

○ (19페이지, 통합재가서비스 계약 전 확인) 타기관 급여이용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월 중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 이용자는 통합재가 이용 불가	월 중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고시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 이용자는 통합재가 이용 불가

○ (22페이지, 서비스 이용 대상) 타기관 급여이용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월에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 및 시설급여 계약이 있는 경우 통합재가 서비스 급여 계약 불가	해당 월에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고시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 및 시설급여 계약이 있는 경우 통합재가서비스 급여 계약 불가

○ (23페이지, 통합재가서비스 개시 전 안내 필수 사항) 타기관 급여 이용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④ (타 급여 이용불가)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한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이용할 수 없음	④ (타 급여 이용불가)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한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고시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를 이용할 수 없음

○ (32페이지, 참여철회 및 선정취소) 지정갱신제 관련 내용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등에 따라 대표자와 설립구분이 동일하나 기관기호가 변경된 기관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p> <p>※ 참여신청 대상(하나의 기관기호로 2종 이상의 급여제공 및 시설·인력기준 충족) 조건을 갖추어야 함</p>

□ 제2장 다빈도 Q&A

- (Q1-3)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계약 종료 후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정 전	개정 후
<p>○ 네. 다만,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한 통합재가 수급자는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p> <p>※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위 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 전 안내</p>	<p>○ 네. 다만,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한 통합재가 수급자는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해당 월 중에는 다른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u>고시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가족휴가제</u> 제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u>또한, 통합재가 계약기간과 일반 재가급여 계약기간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u></p> <p>※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위 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 전 안내</p>

- (Q3-7) 통합재가수급자에 대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주·야간보호의 사례관리자가 수행하여도 되나요?

개정 전	개정 후
<p>○ 아니요. 통합재가기관의 사례관리자라고 하여도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라 각 급여종류별로 신고된 사례관리자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p> <p>- 따라서,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은 방문요양 급여종류에 신고된 사례관리자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p>	<p>○ 아니요. 통합재가기관의 사례관리자라고 하여도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라 <u>방문요양 사례관리자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u></p> <p>- 따라서,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은 방문요양 급여종류에 신고된 사례관리자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p> <p>○ 다만,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야간보호의 사례관리자가 주·야간보호형 제공기관에서 주·야간보호 제공시간 중 수행 가능합니다.</p>

- (Q3-11)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주·야간보호에서 급여관리를 수행하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으로 인정 하나요?

개정 전	개정 후
<p>○ 네. 주·야간보호 사례관리자가 고시 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p> <p>- 단,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중인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대부분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의 사례관리자가 주·야간보호 내에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때 인정합니다.</p>	<p>○ 네. 주·야간보호 사례관리자가 고시 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p> <p>- 단,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중인 수급자의 <u>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0일 이상(고시 제 32조 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 비용 포함)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u>, 주·야간보호의 사례관리자가 주·야간보호 내에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때 인정합니다.</p>

□ 제3장 서식

- (68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 추가
- (70페이지, 별지 제8호서식) 작성요령 및 특정내용 구분코드 추가
- (74페이지, 사례관리 참고서식1) 현행화
- (81페이지, 사례관리 참고서식3) 현행화